

이 보도자료는 **2018. 6. 27.(수) 11: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제1차장검사 자맹기  
전화 031-212-3131  
팩스 031-210-4456

## 보도자료 2018. 6. 27.(수)

자료문의 : 첨단범죄 전담부  
전화번호 : 031-212-3132  
주책임자 : 부장검사 이시원

# OLED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유출 사건 수사 결과

- 수원지방검찰청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가 최초 입수한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유출 첩보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긴밀하게 공조하여 수사한 결과,
  - 3명 구속기소, 4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하였음
- 먼저, 「**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 중국으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 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한 A회사 前 연구원 및 중국 B회사 영업 부장(중국인)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브로커 등 가담자 4명을 불구속 기소, 중국 B회사 대표 1명을 기소중지하였음
- 다음으로, 「**풍력 블레이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 산업기술인 ‘풍력시스템 개발·실증 기술’에 관한 자료 일체를 유출 하고, 그 중 일부를 역대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중국 E회사에 넘긴 D대학 조교수(前 국책연구기관 센터장) 1명을 구속기소하였음
-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으로 보강된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산업보호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임

1

## 사건의 개요

※ 피고인별 처분내용 별첨

### 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 A회사 前 연구원 A○○ 등 4명과 중국 B회사 영업부장 B○○(중국인) 등 2명은 공모하여,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2017. 8. 24. ~ 2018. 2. 23.경 A회사의 OLED 국가핵심 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 유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
- C회사 대표인 브로커 C○○은 A○○ 등이 A회사의 국가핵심기술 등을 가지고 중국 B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알선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A○○, B○○, C○○은 공모하여, A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보내주는 등 배임 [업무상배임]
- A○○은 C○○로부터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600만원 및 향응 수수 [배임수중재]

※ 참고 : 이 사건 유출기술은 삼성SDC의 협력사가 보유한 OLED 관련 기술로서, 삼성SDC 측의 관련 기술이 유출된 것은 아님

### 풍력 블레이드 산업기술 해외 유출

- D대학 조교수(前 국책연구기관 센터장) E○○은,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2017. 2.경 위 국책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인 ‘풍력시스템 개발·실증 기술’ 관련 파일 및 문서 일체를 유출하고, 2017. 10. ~ 2018. 5.경 위 유출한 산업기술을 중국 E회사에 제공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 2 주요 수사 경과

- '18. 4. 12. OLED 관련 사건 첩보(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접수
- '18. 4. 25. 풍력 블레이드 관련 사건 첩보(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접수
- '18. 5. ~ 6. 압수수색 및 관련자 수사
- '18. 6. 14. [풍력시스템 사건] D대학 조교수 구속기소
- '18. 6. 15. [OLED 사건] A회사 前 연구원 구속기소
- '18. 6. 22. [OLED 사건] 중국 B회사 영업부장(중국인) 구속기소
- '18. 6. 26. [OLED 사건] C회사 대표 브로커 등 불구속기소

## 3 수사 결과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 고취

- OLED 디스플레이는 차별화된 색상 표현력, 휘어짐이 용이한 디바이스 구조 등의 특성으로 인해 TV, 스마트폰 액정화면 등에서 LCD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 OLED 패널 생산량의 95% 이상을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음
  - 본건 OLED 관련 기술은 2013. 10. 2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국가핵심기술<sup>1)</sup>로 지정되었고, A회사가 투자한 연구·개발비용만 약 500억 원 이상임
- 또한, 국내 풍력발전 산업(세계시장 규모 연간 70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2006년경부터 약 6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고, 이 사건의 풍력발전 관련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름

1)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법 제9조)

-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등을 취급하는 연구원들은 이직 후 사용하려는 생각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장하는 관행이 여전함
  - OLED 사건의 경우, 前 연구원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서버에 저장된 산업기술 파일 일부를 백업받았고, 평소에도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장하기도 함
  - A○○ 등은 중국으로 이직하면 연봉 합계 약 5억 8,000만원(5명)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노동계약을 작성함
- 한편, 풍력 블레이드 사건과 관련하여, H○○는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름
  - H○○는 위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로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E회사와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약 4,20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음

### 관련자들의 계획적·조직적 증거인멸

- OLED 사건의 경우, 해외로 이직을 모의하면서 증거인멸이 용이한 해외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고,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수시로 삭제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증거를 인멸함
- 특히, OLED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브로커에게 맡긴 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전달받기도 함<sup>2)</sup>

2) 관련자들은 중국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특히 국정원에서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회사의 자료가 들어있는 외장하드 등을 비밀스럽게 전달받았음

- 前 연구원은 연봉협상 과정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중국 출국시 외장하드 소지가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브로커에게 외장하드를 잠시 맡겨두면서 해외 출국하면 보내달라고 부탁함

- 이후 필요에 의해 외장하드를 되돌려 받는 과정도, 브로커가 前연구원이 있는 영화관으로 직원을 보내 '저희 직원이 지금 극장 근처에 남자화장실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박사님 저희 직원이 매표소 근처에 있는데요. 박사님 만나면 물건만 조용히 전해주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라고 문자를 통해 연락 후 물건을 전달하는 등 비밀스럽게 차명폰과 외장하드를 전달함

## 기술유출에 기댄한 외국인 구속 기소

- 중국은 우리나라의 OLED 관련 기술을 취득하고자 연구원 스카우트, 정보수집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기술을 빼내 가려한 **외국회사 임직원(중국인)의 협의를 밝혀 최초로 구속기소하였음<sup>3)</sup>**
- ※ 그 동안 강제수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기술을 유출한 내국인과 공모한 해외 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웠음

## 관계기관 공조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전 차단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과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가핵심기술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기 전 차단하였음**
- OLED 사건의 경우, 피해기업이 연구원들의 이직 소문을 듣고 바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였음
- 풍력 블레이드 사건의 경우에도, ㉠○○는 향후 중국 E회사와 계약기간 및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중요한 핵심기술이 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음

<sup>3)</sup> 이직협상을 주도한 중국회사 직원은 수사초기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고, 단지 중국 국적의 30대 여자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정황, 출입국 내역 등으로 어렵게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으며, 인적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아 안심하고 입국하던 중국인을 공항에서 신병 확보 후 구속 기소에 이르게 되었음

## 4 향후 계획

-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보호 허브(HUB) 역할 수행**
- 수원지검은 2017. 12. 1.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보호 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으로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임

[별첨]

## 피고인별 처분 내용

### [OLED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 등
1	㉔○○(36세) A회사 前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7. 8. 24.~'18. 2. 23.경 A회사의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li>㉔○○ 등과 공모하여, A회사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 해주고, 현금 600만원 및 향응을 수수[업무상배임, 배임수재]</li> </ul>	구속기소 (18.6.15.)
2	㉔○○(여 30세) 중국 B회사 영업부장 [중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㉔○○이 A회사의 OLED 관련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 B회사로 이직하도록 하는 등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하는데 가담[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li>㉔○○ 등과 공모하여, A회사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총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 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을 받음[업무상배임]</li> </ul>	구속기소 (18.6.22.)
3	㉔○○(43세) C회사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이 A회사의 OLED 관련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 B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㉔○○과 ㉔○○을 알선하는 등으로 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산업기술보호법위반]</li> <li>㉔○○ 등과 공모하여, A회사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B회사의 제품을 평가 해주고, 현금 600만원 및 향응을 공여[업무상배임, 배임중재]</li> </ul>	불구속기소 (18.6.27.)
4	㉔○○(31세) A회사 前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7. 8. 24.~'18. 2. 23.경 A회사의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ul>	불구속기소 (18.6.27.)
5	㉔○○(33세) A회사 前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7. 8. 24.~'18. 2. 23.경 A회사의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ul>	불구속기소 (18.6.27.)
6	㉔○○(36세) A회사 前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중국 B회사로 이직하여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17. 8. 24.~'18. 2. 23.경 A회사의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ul>	불구속기소 (18.6.27.)
7	㉔○○(53세) 중국 B회사 대표[중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㉔○○ 등과 공모하여, ㉔○○이 A회사의 OLED 관련 기술 자료를 가지고 중국 B회사로 이직하도록 하는 등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파일 5,130건을 유출하는데 가담[산업기술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li> </ul>	기소중지 (18.6.27.)

### [풍력 블레이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리 등
1	㉔○○(39세) D대학 조교수 (前국책연구원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 2.경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풍력시스템 개발·실증 기술'에 관한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li> <li>'17. 10. ~ '18. 5.경 유출한 산업기술을 토대로 약 1억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E회사에 기술컨설팅을 제공하여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li> </ul>	구속기소 (18.6.14.)

## 관련 규정

### ■ 관련 규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6의2.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 제36조(벌칙)

-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산업발전법]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규정 취지 등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보호 법률」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 기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요건상 제한,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의 기술보호가 미흡하였던 적용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독립적 경제적 가치, 비공지성, 비밀유지관리성 등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함(대법원 2013도 12266 판결, 서울중앙법원 2016노2680 판결 등)**